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2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년 4월 일

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을
변경 개정하고자 함.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정비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2조의2)

- 존속기한 변경(2021.6.30. → 2026.6.30.)

나. 기금운영위원회(안 제6조 제2항)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1. 02. 19. ~ 03. 11.) 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규제 심사대상 미 해당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본문 중 “2021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”을 “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
2.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 담당국장, 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.

3. 위촉직 위원은 구 의원과 중소기업체,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2026년 6월 30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③ (생략)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----- ----- -----</p>
<p>⑤ (생략)</p> <p>제6조(기금운용위원회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·2. (생략)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기금운용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필요-----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</p>

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 위원은 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구의원과 중소기업체,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~ ⑥ (생략)

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
2.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 담당국장, 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.

3. 위촉직 위원은 구 의원과 중소기업체,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: 지역경제과장 김 강 수

(담당: 행정8급 홍지훈 / ☎ 2600-6276)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 개정하고자 함.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정비

□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2조의2)
 - 존속기한 변경(2021.6.30. → 2026.6.30.)
- 기금운영위원회(안 제6조 제2항)
 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정비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된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고,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.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가번호	2021 - 7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성 명	이경민
입안주무부서	지역경제과	통보(조치)일		2021. 3. 5.	
관련조문		검토결과		조치사항	
개정안 전부		원안 동의		-	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

관리번호	2021A서울강서007			
정책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	
	부서명	지역경제과		
	담당자명	홍지훈	전화번호	02-2600-6276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	
	부서명	가족정책과		
	담당자명	최은영	전화번호	02-2600-6762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1년 02월 26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1년 03월 08일			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03월 10일

【지방자치법】**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】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